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무위원 후보자 이해충돌 사전 검증·조치〉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56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참고사항	2
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 참고자료	9
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2212955, 2025-09-15) ..	9

I. 개 요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5.
3. 회부연월일 : 2025. 9.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기업 임원의 직에 있으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해당 임원의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또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직하였던 기관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수행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업 임원의 지위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산상 이해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미리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재산의 처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생략)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및 검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산상 이해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u>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여금 재산의 처분,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증명서류를 같은 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무위원 검증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려는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검토의견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그동안 민간기관의 임원으로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어 해당 임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에 임하여 이해충돌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는데,²⁾

국무위원 후보자가 사기업 임원의 지위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여금 재산의 처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2) 김지현, 「제구실 못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 미리 걸러낼 장치 필요」, 법률신문, 2025년 7월 9일, URL: <https://www.lawtimes.co.kr/news/209381>.

개정안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후보자에 한정한 별도의 절차를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다른 공직후보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사전 검증 결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여금 재산의 처분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가 국무위원 임명이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라는 점에서 해당 공직후보자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셋째, 검증보고서 및 보고서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검증은 「공직자윤리법」 상 직무관련성 심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³⁾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검증 결과에 따라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여금 재산의 처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증 및 보고서 기재 대상이 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인사청문회법」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닌 현행법에 두는 것은 전체 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절차를 둘 경우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전에 재산처분 및 퇴직 강제는 후보자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여금 재산의 처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사실상 강제하는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류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검증 및 보고서 기재 대상 사항이나 재산의 처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퇴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의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증빙서류만으로 공직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 등을 검증하기에 부족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윤리성을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1. ~ 5.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 ----- ----- -----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에 한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보고서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